

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
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

2015년 3월 2일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전문위원 김용범

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지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5년 2월 16일(月), 마포구청장

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15년 2월 23일(月)

4. 제안 이유

-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의2(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)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법 제4조의3(정비구역 등 해제)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
5. 주요내용

- 대상지 현황
 - 구역명칭 :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
 - 구역위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38번지 일대
 - 구역면적 : 18,000㎡
 - 토지등소유자수 : 119명

○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역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용적률	건폐율	층수	비고
기정	대흥1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	대흥동 338번지 일대	18,000	210	50	15	
변경	해 제						

○ 해제사유
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에 따른 “대흥1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” 승인 취소

6. 참고사항

○ 추진경위

- 2006.03.13 : 정비예정구역지정(시 고시 제2006-95호)
 - 2009.07.30 : 추진위원회 승인
 - 2013.02.27 :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 접수
 - 2013.08.27 : 추진위원회승인 취소(구 고시 제2013-161호)
 - 2013.11.14 : 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
 - 2014.06.27 : 판결선고(우리구 승소)
 - 2014.12.18 :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- ※ 공람기간 : 2014.12.18 ~ 2015.01.19(의견없음)

7. 근거법규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3(정비구역 등 해제)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16조의2(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)

8. 검토 의견

- 본 구역은 대흥동 338번지 일대로 2009.07.30.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, 최근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에 따른 주민갈등 등으로 지연·중단되고 있음.
- 따라서 주택재건축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는 구역 내 토지소유자 119명 중 과반수 이상(51.26%)인 61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여 지난 2013년 8월 27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음.
-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대한 관련법규를 보면,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(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) 제1항 제1호와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15조의2에서 규정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법적요건인 과반수(51.26%)를 초과하여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.
- 같은 법 제4조의3(정비구역 등 해제)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“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” 고 규정되어 있어 본 구역을 해제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